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00
----------	------

발의연월일 : 2016. 10. 31.

발의자 : 김종석 · 전희경 · 김성태  
김선동 · 윤한홍 · 경대수  
김학용 · 김광림 · 정태옥  
김한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단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관의 제·개정 등(안 제18조의3)

금융회사의 개별약관 제·개정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소비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를 유지함.

나. 약관 작성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조항 신설(안 제38조의2제1호다목 신설)

제18조의3에 따른 약관 작성기준을 위반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8조의3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5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제정·개정한 경우: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30 이하

제40조제1항제5호 중 “제18조의3제1항”을 “제18조의3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u>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약관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p> <p>2.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p> <p>3.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p>	<p>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단서 삭제&gt;</p> <p>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p> <p>2.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lt;삭 제&gt;</p>

<p><u>4. 제6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u></p> <p>②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③ · ④ (생략)</p> <p>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p>	<p>&lt;삭 제&gt;</p> <p>②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2항 및 제4항-----. -----</p>
---	---

<p>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 ----- ----- ----- ----- -----.</p>
<p>⑥ (생 략)</p>	<p>⑥ (현행과 같음)</p>
<p>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 ----- ----- ----- ----- -----.</p>
<p>1. 상호저축은행</p>	<p>1. -----</p>
<p>    가. · 나. (생 략)</p>	<p>    가. · 나. (현행과 같음)</p>
<p>    &lt;신 설&gt;</p>	<p>    다.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p>
<p>                3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제정 · 개정한 경우: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                 은 이익의 100분의 30 이                 하</p>	<p>                3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제정 · 개정한 경우: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                 은 이익의 100분의 30 이                 하</p>
<p>2. · 3. (생 략)</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40조(과태료) ① ----- ----- ----- -----.</p>
<p>1. ~ 4. (생 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p>	<p>5. 제18조의3제2항-----</p>

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 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 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 ----- -----
6. ~ 13. (생략)	6.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